

#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 시 까지)
- 1.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주안 극동스타클래스 더 로얄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www.주안극동스타클래스.com)합니다.
- 2.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담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주안극동스타클래스.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의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체온측정 온도가 37.5도가 넘을 경우,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방문자 본인이나 현재 자가 격리 대상자이거나, 가족 혹은 일상적 접촉이 잦은 지인 중에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시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록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해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에 주시거나 바리버 청약자격 미숙시,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인천광역시 거주)	일반1순위 (기타)	일반2순위	당첨자표표	계약체결
일정	8월 16일(화)	8월 17일(수)	8월 18일(목)	8월 19일(금)	8월 25일(목)	9월 5일(월) ~ 9월 7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10:00~14:00)</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ul>	당사 견본주택

※ 고객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정밀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자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담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자 공동인증서를 청약록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로보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정서류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7899호(2022.08.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유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82-1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4층, 지상 23~33층 2개동 총 249세대 중 일반분양 114세대 (특별공급 65세대(일반기관추천) 13세대, 다자녀가구 12세대, 신혼부부 24세대, 노부모부양 4세대, 생애최초 1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5년 04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함)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기타 공용면적 (자차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면적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1	2
민영 주택	2022000512	01	059.6948A	59A	059.6948	19.8072	79.5020	30.8179	110.3199	14.5876	4	0	0	1	0	0	1	3	0		
					059.4525B	59B	059.4525	20.2485	79.7010	30.6927	110.3937	14.6241	19	2	2	4	1	2	11	8	0
					074.7674A	74A	074.7674	24.4442	99.2116	38.5992	137.8108	18.2040	59	7	6	12	2	6	33	26	4
					074.4695B	74B	074.4695	24.9580	99.4275	38.4454	137.8729	18.2436	32	4	4	7	1	4	20	12	1
합계					114	13	12	24	65	49	5										

- ※ 평형면적(㎡)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서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공급면적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면적표기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 (라인)	층 구분	분양가격			중도금 (60%)						잔금 (30%) 입주시정일	
				대지비	건축비	계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 시	22.10.25	23.03.24	23.09.25	24.02.23	24.08.23		25.02.25
59A	1	102동	2층	130,732,470	235,567,530	366,30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123,300,000	148,363,330	267,336,670	415,70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41,570,000	124,710,000
				129,162,110	232,737,890	361,90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36,190,000	108,570,000
59B	1	102동 4호	3층	133,373,530	240,326,470	373,70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37,370,000	112,110,000
				137,584,950	247,915,050	385,50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38,550,000	115,650,000
				140,404,460	252,995,540	393,40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118,020,000
				141,796,370	255,503,630	397,300,000	39,730,000	39,730,000	39,730,000	39,730,000	39,730,000	39,730,000	39,730,000	119,190,000
74A	1	20층 이상	2층	153,359,930	276,340,070	429,70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42,970,000	128,910,000
				158,534,980	285,665,020	444,20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44,420,000	133,260,000
				163,710,030	294,989,970	458,700,000	45,870,000	45,870,000	45,870,000	45,870,000	45,870,000	45,870,000	45,870,000	137,610,000
				168,885,080	304,314,920	473,20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47,320,000	141,960,000
				172,347,010	310,552,990	482,900,000	48,290,000	48,290,000	48,290,000	48,290,000	48,290,000	48,290,000	48,290,000	144,870,000
				174,060,130	313,639,870	487,70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48,770,000	146,310,000
				158,106,700	284,893,300	443,0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44,300,000	132,900,000
				163,460,200	294,539,800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137,400,000
				168,778,010	304,121,990	472,90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47,290,000	141,870,000
				174,274,270	314,025,730	488,30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48,830,000	146,490,000
74B	1	101동 3호	2층	153,110,100	275,889,900	429,0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42,900,000	128,700,000
				158,249,460	285,150,540	443,40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44,340,000	133,020,000
				163,424,510	294,475,490	457,90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45,790,000	137,370,000
				168,599,560	303,800,440	472,40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47,240,000	141,720,000
				172,025,800	309,974,200	482,0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48,200,000	144,600,000
				173,738,920	313,061,080	486,80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48,680,000	146,040,000

- 분양대금 납부방식 및 납부방법
- | 계좌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관리계좌(계약금, 중도금, 잔금) | 하나은행 | 415-910033-58604 | 극동건설(주) 외 3개사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0101동 1301호 홍길동 → "01011301홍길동")
  - 분양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액입금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주택형	확장위치	금액	계약금(10%)		잔금(90%) 입주시정일	비고
			계약 시	1,550,000		
59A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15,500,000	1,550,000	13,950,000		
59B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15,700,000	1,570,000	14,130,000		
74A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드레스룸	17,300,000	1,730,000	15,570,000		
74B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17,300,000	1,730,000	15,570,000		

- 2) 발코니 확장 계약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수선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 배수 드레인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주방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판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의 규모, 창호의 위치, 주방의 레이아웃, 거실아트월, 안면인식도어캐비닛, 지문인식 디지털도어락, 공기정화형 전열교환기, 전동 블랙건조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일부 선택형 옵션(현관중문, 전기 키펀만 선택 가능함)입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하나은행	415-910033-64804	극동건설(주)

## I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3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간의 추천 및 인장서류를 받은 분
  -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에 따른 해당 기간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 추천기간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과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관리지원과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방산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4세대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처적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정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청·자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세대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이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인·가구
  - \* (1년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인·가구는 추정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차와 같은 세대) 구성하는 경우 포함하고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